농 촌 진 흥 청 시 정 요 구

제 목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이자 미반환

기 관 명 강원도

관계기관 화천군

내 용

화천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 과채류 생산기술 보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"2015년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"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」제53조의3항에 따르면 "사업 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"으로 하고 있으며,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」제31조에 따르면 "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"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도 화천군〇〇〇〇센터에서는 2015년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(사업비 100백만원)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및 이자액 1,810,236원(부가가치세 1,809,060원, 이자액 1,176원)을 반환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

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예산 1,810,236원을 반환하시고,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